

## 펌프 부분품-Fluid ends

### 요약

사례명	펌프 부분품-Fluid ends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
사례번호	NY N351810 (2025.08.27.)
사실관계	<p><b>시나리오 1</b> 중국에서 제조된 직사각형 모양의 강철 블록 및 기타 부품을 한국으로 수입한 후, 한국에서 블록을 하우징으로 가공하고 기타 부품과 함께 최종 조립하여 Fluid ends 생산</p> <p><b>시나리오 2</b> 한국에서 제조된 직사각형 모양의 강철 블록을 중국으로 수출한 후, 중국에서 블록을 하우징으로 가공하고 기타 부품과 함께 최종 조립하여 Fluid ends 생산</p>
쟁점 및 판정	<p>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하우징은 가압 과정에 기여하고 내부 부품을 감싸는 역할을 담당하며, 완제품 가치의 90%를 차지하므로 최종 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 구성 요소임</li><li>반면, 하우징에 기타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은 단순히 기타 부품을 삽입하고 결합하는 단순 조립 과정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음</li><li>따라서, 최종 물품의 원산지는 하우징이 제작된 국가이며, 이에 따라 시나리오 1에 따른 원산지는 한국, 시나리오 2에 따른 원산지는 중국임</li></ul>
근거법령	-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(19 U.S.C. § 2411)

## I 판정사례

### 사례명 [펌프 부분품-Fluid ends]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

사례번호 NY N351810 (2025.08.27.)

#### 사실관계

요청자 Jereh Energy Equipment and Technologies Corporation (대리인: TradeLaw PC)

제품명	Fluid ends
제품	구성
용도	• 유압 파쇄 및 석유·가스 산업에서 사용되는 피스톤 펌프의 구성품

#### 제조공정



01

직사각형 모형의  
강철 블록 제작



02

성형, 드릴링 등의 공정을 통해  
블록을 하우징으로 가공



03

기타 부품과 함께  
최종 조립



04

미국 수출

#### 상세공정

##### 시나리오 1

1. 중국에서 제강, 전기슬래그 재용해, 단조 공정을 통해 직사각형 모양의 블록 제작
2. 블록 및 기타 중국산 부품을 한국으로 수입
3. 표면 성형, 실린더 드릴링, 열처리, 밀링, 보링 등의 공정을 통해 최종 제품의 설계 및 치수에 맞도록 블록을 하우징으로 가공
4. 기타 중국산 부품과 함께 최종 조립
  - 밸브, 플랜지, O-링 및 스프링 등의 기타 부품을 하우징에 조립
5. 미국 수출

##### 시나리오 2

- 시나리오 1의 1번 공정이 한국에서 수행되며, 나머지 공정은 모두 중국에서 수행

## 쟁점사항

- ✓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

## 관련 법령 및 분석

1

##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

## 관련 법령 검토

- 「Section 301(b) of the Trade Act of 1974」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며, 이는 실질적 변형(substantial transformation)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
  -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: 명칭(name), 성질(character), 용도(use)의 변화 여부

❖ 참고 판례: *Texas Instruments v. United States*, 681 F.2d 778, 782 (1982)

❖ 참고 판례: *National Hand Tool Corp. v. United States*, 16 C.I.T. 308 (1992), *aff'd*, 989 F.2d 1201 (Fed. Cir. 1993) 1201 (Fed. Cir. 1993)

- CBP는 제조 공정이 실질적 변형에 이를 만큼 복잡한지 여부는 해당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함

## 판정 결과

- 하우징은 가압 과정에 기여하고 내부 부품을 감싸는 역할을 담당하며, 완제품 가치의 90%를 차지하므로 최종 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 구성 요소임
- 반면, 하우징에 기타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은 단순히 기타 부품을 삽입하고 결합하는 단순 조립 과정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음
- 따라서, 최종 물품의 원산지는 하우징이 제작된 국가이며, 이에 따라 시나리오 1에 따른 원산지는 한국, 시나리오 2에 따른 원산지는 중국임

## 결론

- ✓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는 시나리오 1의 경우 한국, 시나리오 2의 경우 중국임

## II 시사점

- 본 사례에서 Fluid ends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 구성 요소는 하우징이며, 하우징에 기타 부품들을 결합하고 조립하는 과정은 단순한 공정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음

### ③ 참고자료

- CBP Ruling NY N351810 (2025.08.27), <https://rulings.cbp.gov/ruling/N351810>
-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(19 U.S.C. § 2411), <https://uscode.house.gov/view.xhtml?req=granuleid:USC-prelim-title19-section2411&num=0&edition=prelim>
- Texas Instruments, Inc. v. United States (1982), <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6928163/texas-instruments-inc-v-united-states/?q=Texas+Instruments%2C+Inc.+v.+United+States>
- National Hand Tool Corp. v. United States (1993), [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6737087/national-hand-tool-corp-v-united-states/?q=National+Hand+Tool+Corp.+v.+United+States&type=o&order\\_by=score+desc&stat\\_Published=on](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6737087/national-hand-tool-corp-v-united-states/?q=National+Hand+Tool+Corp.+v.+United+States&type=o&order_by=score+desc&stat_Published=on)